

의안번호	제 181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
교육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윤홍창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5년 6월 1일

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181
----------	-----

(윤홍창 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 : 2015년 6월 1일

발 의 자 : 윤홍창, 정영수, 김양희,
이광희, 이숙애, 이종욱,
임병운의원(7인).

1. 제정이유

충청북도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·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(안 제3조)
- 나. 3년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지원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(안 제6조, 안 제7조)
- 마.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안 제8조, 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,
「청소년 기본법」

나. 관계부서협의 : 충청북도교육청 진로인성교육과와 협의완료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라. 입법예고

1) 기 간 : 2015. 5. 11. ~ 2015. 5. 31.(20일간)

2) 제출의견 : 특이사항 없음

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학업중단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
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
3. “학교 밖 청소년”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4. “대안교육”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,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·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.
5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 모두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

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추진방향과 목표
2.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
3.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시행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라 해마다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장기결석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
2.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, 학생·학부모 상담, 숙려제 운영강화
3.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등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운영·지원
4.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·단체와의 협력·지원체계 구축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재정지원) ① 교육감은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초·중·고등학교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에 대한 지도·감독)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1.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한 경우
3.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

제8조(위탁)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충청북도, 충청북도지방경찰청, 청소년육성단체, 대안교육기관 등과 「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실무협의회」를 구성·운영하여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초·중등 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·공민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제4조(학교의 설립 등)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·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교육감 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사립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8조(학생의 징계)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. 다만,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.

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학교 밖 청소년 이란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 -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 - 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
□ 청소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“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할 수 있다.

비용 추계서

1. 비용추계내용

○ 재정수반요인

-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제5조, 제7조, 8조, 9조에 따른 예산 추계

2. 비용추계

-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이 시행되면 416,82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(매년 확대 예정)

구분 \ 연도	2015년도	2016년도	2017년도	2018년도	2019년도
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	213,000천원	288,000천원	288,000천원	288,000천원	288,000천원
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교 운영	150,000천원	200,000천원	250,000천원	300,000천원	350,000천원
대안교육위탁 교육기관	49,000천원	50,000천원	60,000천원	70,000천원	80,000천원
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 청 소년 교육지원 실무 협의회	4,820천원	6,320천원	7,820천원	9,320천원	10,820천원
합 계	416,820천원	544,320천원	605,820천원	667,320천원	728,820천원

3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○ 기초자료 및 세부내역

- 학업중단숙려제 운영(도내 모든 고등학교 지원 및 중학교까지 지원비 확대 예정) : 213,000천원
 - 1,000천원×15교=15,000천원, 3000천원×66교=198,000천원
-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교 운영(15교운영): 150,000천원
 - 10,000천원×15교=150,000천원

-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(5기관 지정에서 점차 확대운영): 49,000천원
10,000천원×4기관=40,000천원, 9,000천원×1기관=9,000천원
-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실무 협의회 운영
 - 위원회 참석수당(2,500천원) : 70천원×5명×5회=1750천원, 30천원×5명×5회=750천원
 -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컨설팅 및 업무추진비(4,820천원): 150천원×10명×3회=4500천원, 16천원×10명×2회=320천원

4. 작성자 : 진로인성교육과 인턴장학사 박경원(290-2285)